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후 변화에 따라 수해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하층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1) 개정 「건축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침수 관련 지구를 기본으로 규정하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중 지정 목적이 상이한 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

3) 그 외 건축 허가권자가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추가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지하층 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

- 1) 개정 「건축법」 제53조제2항에서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2) 법에서 예시로 열거하고 있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외 주거용도 또는 유사한 형태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생활안전 확보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침수 우려지역)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제63조의6을 제63조의7로 하고, 제6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6(지하층)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다중생활시설
4. 노유자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침수 우려지역)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u> <u>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한다)</u> <u>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u>
<u>제9조의2 (생 략)</u> <u><신 설></u>	<u>제9조의3 (현행 제9조의2와 같음)</u> <u>제63조의6(지하층)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u> <u>1. 단독주택</u> <u>2. 공동주택</u>

<u>제63조의6</u> (생략)	<u>3. 다중생활시설</u> <u>4. 노유자시설</u> <u>제63조의7</u> (현행 제63조의6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082